

부동산일괄경매신청서

사 건 (갑)20〇〇타경〇〇〇호 (을)20〇〇타경〇〇〇호

채 권 자 (갑)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(을)주식회사 ● ● 은행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자 은행장 ●●●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들에 관하여 경매중인 부동산들은 비록 지번이 다른 필지이오나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66-353 대 2㎡와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66-355 대 31㎡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66-32 대 132㎡의 대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, 모두가 일단의 부동 산을 이루고 있고 대문과 담장, 몸 채의 대지를 이루는 부동산이 각각 다른 사람 에게 낙찰되면 새로운 분쟁이 예상되고 서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, 모두 동 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이들을 일괄 경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 지적도등본

1통

위 채권자 (갑)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(을)주식회사◉●은행 대표자 은행장 ◉◉● (서명 또는 날인)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1조, 민사소송법 제31조에 형제출법원 하고 민사소송법 제25조(관련재판적)의 규정을 준용함. 다만, 등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함.

제출부수 신청서 1부

제98조(일괄매각결정)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·형태·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 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 하도록 결정할 수있다. 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·형태·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(금전채권을 제외한다)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 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.

제99조(일괄매각사건의 병합)①법원은 각각 경매신청 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. ②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. ③제1항 및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.

제100조(일괄매각사건의 관할)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민사집행법 관련법규

제101조(일괄매각절차)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 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. 다만,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, 그 중에 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. 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,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 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.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③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 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 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제3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. ⑤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